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42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09.0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15.07.29

www.edusky.co.kr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정보공개서

(주)하늘교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하늘교육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56

Tel. 02)761-3200 Fax. 02)780-6595

하늘교육 사업1본부 Tel. 02)761-3200 Fax. 02)780-304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하늘교육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6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9. 8. 6.	1999. 8. 1.	임성호	02-761-3200	02-780-6595
	법인등록번호	110111-1748940	사업자등록번호	116-81-7582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관계사	(주)서초입시 연구사	서초종로학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5 (서초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진원	02-3472-1881	02-3472-9105
			법인등록번호	110111-1574113	사업자등록번호
관계사	(주)목동입시 연구사	목동종로학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84 (목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2649-2881	02-2648-2769
			법인등록번호	110111-1574428	사업자등록번호
관계사	(주)노량진종 로학원	노량진종로학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67 (노량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6205-1881	02-826-0447
			법인등록번호	110111-1622623	사업자등록번호
관계사	(주)서초종로 학원	서초종로학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27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597-1881	02-587-0401
			법인등록번호	110111-2163957	사업자등록번호
관계사	(주)종로학원	종로학원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392-1881	02-364-7562
			법인등록번호	110111-5632173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서진원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6 (주)하늘교육 (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761-3200	02-780-6595
		종로학원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6 (주)종로학원 (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392-1881	02-364-7562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5 (서초동) (주)서초입시연구소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진원	02-3472-1881	02-3472-910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임성호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6 (주)하늘교육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761-3200	02-780-6595
		종로학원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56 (주)종로학원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392-1881	02-364-7562
			서울 양천구 오목로 284 (주)목동입시연구소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2649-1881	02-2648-2769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67 (주)노량진종로학원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6205-1881	02-826-04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7 (주)서초종로학원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597-1881	02-587-040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서진근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6 (주)하늘교육 (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761-3200	02)780-659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정희상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6 (주)하늘교육 (감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761-3200	02)780-659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하늘교육 교육원]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하늘교육 교육원	
상 호	하늘교육 OO교육원	해당지역 초등학교명을 기준으로 명칭사용 해당 광역시/구를 기준으로 명칭사용
상표(서비스표)		상표 등록번호: 41-0064903-000
	하늘교육MEX	하늘교육 수학 대표 브랜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1-0091338-0000호)
	초등내신 대비 MEX	하늘교육 초등수학 내신 브랜드
	중등내신 대비 MEX	하늘교육 중등수학 내신 브랜드
	하늘교육 C-MEX	하늘교육 사고력수학 브랜드
	하늘교육 SCIENCE	하늘교육 과학 대표 브랜드
	하늘교육C-SCIENCE	하늘교육 실험과학 브랜드
	하늘교육EPS	하늘교육 영어 대표 브랜드
	SKY VOCA	하늘교육 영어단어교재 브랜드
	하늘교육SEG	하늘교육 국어·논술 대표 브랜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1-0091339-0000호)
	학교시험 만점학습	하늘교육 내신교재 브랜드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2년	29,170,325	5,181,475	23,988,849	37,648,851	1,154,580	1,415,074
2013년	30,426,349	5,380,035	25,046,314	40,253,133	1,138,984	1,057,464
2014년	36,159,706	10,432,296	25,727,410	40,594,600	776,280	681,096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계산서

제16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하늘교육

(단위 : 원)

과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I. 영업수익(주석14)	40,594,600,472	40,253,133,146
1. 교재수익	32,896,267,857	31,294,649,058
2. 학원수익	5,741,723,156	7,176,345,194
3. 기타수익	1,956,609,459	1,782,138,894
II. 영업비용(주석11과 14)	39,818,319,483	39,114,148,234
1. 급여	4,907,430,655	4,996,969,428
2. 강사료	21,853,061,967	19,878,542,936
3. 복리후생비	518,895,709	552,462,371
4. 외주가공비	2,084,940,874	2,436,410,951
5. 여비교통비	157,993,477	163,002,259
6. 차량유지비	547,270,802	782,653,170
7. 수선유지비	32,207,507	18,516,300
8. 통신비	180,156,295	240,083,360
9. 수도광열비	274,563,317	264,287,322
10. 세금과공과	241,674,555	241,613,182
11. 보험료	101,925,664	95,409,728
12. 지급수수료	3,152,059,071	3,094,900,156
13. 지급임차료	2,635,592,664	2,703,733,910
14. 감가상각비(주석6)	330,633,731	372,681,326
15. 무형자산상각비(주석7)	32,958,294	25,436,115
16. 소모품비	303,323,634	316,449,275
17. 도서인쇄비	180,676,210	215,925,095
18. 광고선전비	1,471,313,728	1,902,363,057
19. 접대비	68,541,425	80,512,479
20. 대손상각비	428,410	599,960
21. 운반비	230,476,970	294,714,388
22. 교육훈련비	4,692,000	2,928,500
23. 식당원재료비	507,502,524	433,952,966
III. 영업이익	776,280,989	1,138,984,912
IV. 영업외수익	258,854,906	375,441,716
1. 이자수익	251,234,876	339,498,897
2. 배당금수익	-	300,000
3. 잡이익	7,620,030	35,642,819
V. 영업외비용	186,742,377	180,876,985
1. 이자비용	23,261,484	611,680
2. 유형자산처분손실	20,255,392	71,067,579
3. 투자자산평가손실	54,620	-
4. 기부금	101,000,000	100,100,000
5. 잡손실	42,170,881	9,097,726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48,393,518	1,333,549,643
VII. 법인세비용(주석12)	167,297,034	276,085,102
VIII. 당기순이익	681,096,484	1,057,464,541

손익계산서

제15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하늘교육

(단위 : 원)

과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I. 영업수익(주석12)	40,253,133,146	37,648,851,557
1. 교재수입	31,294,649,058	27,847,389,644
2. 학원수입	7,176,345,194	8,399,441,604
3. 기타수입	1,782,138,894	1,402,020,309
II. 영업비용(주석10과 12)	39,114,148,234	36,494,270,717
1. 급여	4,996,969,428	4,852,606,833
2. 강사료	19,878,542,936	17,335,964,901
3. 복리후생비	552,462,371	534,053,349
4. 외주가공비	2,436,410,951	2,630,060,842
5. 여비교통비	163,002,259	148,162,493
6. 차량유지비	782,653,170	826,119,729
7. 수선유지비	18,516,300	16,217,608
8. 통신비	240,083,360	223,733,639
9. 수도광열비	264,287,322	230,648,572
10. 세금과공과	241,613,182	242,238,436
11. 보험료	95,409,728	93,249,865
12. 지급수수료	3,094,900,156	3,153,536,651
13. 지급임차료	2,703,733,910	2,787,946,889
14. 감가상각비(주석6)	372,681,326	363,013,994
15. 무형자산상각비(주석7)	25,436,115	15,209,041
16. 소모품비	316,449,275	300,602,310
17. 도서인쇄비	215,925,095	352,524,954
18. 광고선전비	1,902,363,057	1,787,809,258
19. 접대비	80,512,479	90,581,010
20. 대손상각비	599,960	117,359
21. 운반비	294,714,388	279,932,827
22. 교육훈련비	2,928,500	2,021,000
23. 식당원재료비	433,952,966	227,335,957
24. 잡비		586,200
III. 영업이익	1,138,984,912	1,154,580,840
IV. 영업외수익	375,441,716	422,083,118
1. 이자수익	339,498,897	347,423,645
2. 투자자산평가이익	300,000	3,749,424
3. 유형자산처분이익		2,635,364
4. 투자자산처분이익		3,369,382
5. 잡이익		64,905,303
V. 영업외비용	35,642,819	207,023,910
1. 이자비용		180,876,985
2. 투자자산평가손실	611,680	-
3. 유형자산처분손실	71,067,579	-
4. 기부금	100,100,000	200,000,000
5. 잡손실	9,097,726	5,337,118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33,549,643	1,369,640,048
VII. 법인세비용(주석11)	276,085,102	(45,434,860)
VIII. 당기순이익	1,057,464,541	1,415,074,908

재무상태표

제16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15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하늘교육

(단위 : 원)

과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자 산		
I. 유 동 자 산	18,328,522,094	12,430,047,911
(1) 당 좌 자 산	18,328,522,094	12,430,047,911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2,860,449,650	5,628,438,698
2. 단기투자자산(주석4)	4,945,380	6,250,000,000
3. 매출채권(주석14)	18,957,379	20,534,040
4. 미수금	6,568,100	2,115,708
5. 미수수익	42,500,000	152,368,081
6. 단기대여금(주석5)	350,000,000	350,000,000
7. 선급금	15,009,100,570	18,457,772
8. 선급비용	7,852,732	4,826,951
9.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주석12)	28,148,283	3,306,661
II. 비 유 동 자 산	17,831,184,642	17,996,301,623
(1) 투 자 자 산	3,000,000	3,000,000
1. 장기투자자산	3,000,000	3,000,000
(2) 유 형 자 산(주석6)	12,053,601,472	12,168,800,973
(3) 무 형 자 산(주석7)	33,441,467	66,468,286
(4) 기타비유동자산	5,741,141,703	5,758,032,364
1. 보증금(주석14)	5,485,177,100	5,515,934,100
2.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주석12)	255,964,603	242,098,264
자 산 총 계	36,159,706,736	30,426,349,534
부 채		
I. 유 동 부 채	9,637,625,894	4,665,035,405
1. 미지급금(주석14)	609,530,493	555,422,691
2. 단기차입금(주석8)	5,000,000,000	-
3. 미지급비용(주석14)	1,875,403,805	1,761,237,903
4. 선수금	1,529,608,877	1,693,299,412
5. 예수금	553,571,408	520,133,715
6. 부가세예수금	18,753,546	2,710,770
7. 당기법인세부채	50,757,765	132,230,914
II. 비 유 동 부 채	794,670,229	715,000,000
1. 임대보증금	720,000,000	715,000,000
2. 장기미지급금	74,670,229	-
부 채 총 계	10,432,296,123	5,380,035,405
자 본		
I. 자 본 금(주석1)	5,176,627,000	5,176,627,000
1. 보통주자본금	5,176,627,000	5,176,627,000
II. 자 본 잉 여 금	12,507,196,786	12,507,196,786
1. 주식발행초과금	12,507,196,786	12,507,196,786
III. 이 익 잉 여 금(주석10)	8,043,586,827	7,362,490,343
1. 미처분이익잉여금	8,043,586,827	7,362,490,343
자 본 총 계	25,727,410,613	25,046,314,12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6,159,706,736	30,426,349,534

재 무 상 태 표

제15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14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하늘교육

(단위 : 원)

과 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자 산				
I. 유 동 자 산		12,430,047,911		11,152,189,006
(1) 당 좌 자 산		12,430,047,911		11,152,189,006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5,628,438,698		4,169,753,827	
2. 단기투자자산(주석4)	6,250,000,000		6,250,000,346	
3. 매출채권(주석13)	20,534,040		82,236,789	
4. 미 수 금	2,115,708		6,327,902	
5. 미 수 수 익	152,368,081		178,305,274	
6. 단 기 대 여 금(주석5)	350,000,000		351,238,045	
7. 선 급 금	18,457,772		100,609,767	
8. 선 급 비 용	4,826,951		8,973,103	
9.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주석11)	3,306,661		4,743,953	
II. 비 유 동 자 산		17,996,301,623		18,018,136,553
(1) 투 자 자 산		3,000,000		3,000,000
1. 장기투자자산	3,000,000		3,000,000	
(2) 유 형 자 산(주석6)		12,168,800,973		12,230,819,177
(3) 무 형 자 산(주석7)		66,468,286		49,664,401
(4) 기타비유동자산		5,758,032,364		5,734,652,975
1. 보 증 금(주석13)	5,515,934,100		5,506,421,050	
2.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주석11)	242,098,264		228,231,925	
자 산 총 계		30,426,349,534		29,170,325,559
부 채				
I. 유 동 부 채		4,665,035,405		4,431,475,971
1. 미 지 급 금	555,422,691		604,872,126	
2. 미 지 급 비 용	1,761,237,903		1,474,751,347	
3. 선 수 금	1,693,299,412		1,660,951,021	
4. 예 수 금	520,133,715		532,123,059	
5. 부가세예수금	2,710,770		2,425,320	
6. 미지급법인세	132,230,914		156,353,098	
II. 비 유 동 부 채		715,000,000		750,000,000
1. 임 대 보 증 금	715,000,000		750,000,000	
부 채 총 계		5,380,035,405		5,181,475,971
자 본				
I. 자 본 금(주석1)		5,176,627,000		5,176,627,000
1. 보통주자본금	5,176,627,000		5,176,627,000	
II. 자 본 잉 여 금		12,507,196,786		12,507,196,786
1. 주식발행초과금	12,507,196,786		12,507,196,786	
III. 이 익 잉 여 금(주석9)		7,362,490,343		6,305,025,802
1. 미처분이익잉여금	7,362,490,343		6,305,025,802	
자 본 총 계		25,046,314,129		23,988,849,58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0,426,349,534		29,170,325,559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하늘교육	2012년	4,208,553
	2013년	3,452,940
	2014년	2,762,430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임성호	대표이사	2011. 4. ~ 현재	(주)하늘교육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서진원	이사	2014. 8. ~ 현재	(주)하늘교육 이사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서진근	이사	2010. 3. ~ 현재	비상임 이사	-
	정희상	감사	2012.10. ~ 현재	비상임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14년 12월 31일	2	2	11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관계사	서진원 (주)종로학원 (이사)	가맹사업경영	2015.02.~현재	종로학원 (등록번호 : 20090100594) 라는 영업표지의 교육서비스업 경영
관계사	임성호 (주)종로학원 (대표이사)	가맹사업경영	2015.02.~현재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주)하늘교육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1999.08.12. 출원 2000.11.24. 등록	출원 제41-1999-0011678 등록 제41-0064903-0000	(주)하늘교육	2020.11.24
하늘교육 MEX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2002.02.19. 출원 2003.06.26. 등록	출원 제41-2002-0003625 등록 제41-0091338-0000	(주)하늘교육	2023.10.01.
하늘교육 SEG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1999.02.19. 출원 2000.06.26. 등록	출원 제41-2002-0003626 등록 제41-0091339-0000	(주)하늘교육	2023.10.01.
하늘교육 C-SCIENCE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2011.09.20. 출원 2013.01.22. 등록	출원 제40-2011-0051103 등록 제40-0950009-0000	(주)하늘교육	2023.01.22.
하늘교육 Pre-MEX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2011.09.20. 출원 2013.01.22. 등록	출원 제40-2011-0051102 등록 제40-0950079-0000	(주)하늘교육	2023.01.22.
하늘교육 SCIENCE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2011.09.20. 출원 2013.01.22. 등록	출원 제40-2011-0051101 등록 제40-0950038-0000	(주)하늘교육	2023.01.2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가맹사업 현황

1.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를 시작한 날: 1999년 11월 1일

2. [(주)하늘교육]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하늘교육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임성호	1999.11.1. ~ 현재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6

3.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12.12.31.			2013.12.31.			201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32	228	4	173	169	4	159	155	4
서울	51	47	4	35	31	4	33	29	4
부산	7	7	-	4	4	-	4	4	-
대구	31	31	-	28	28	-	25	25	-
인천	12	12	-	7	7	-	11	11	-
광주	12	12	-	10	10	-	6	6	-
대전	12	12	-	12	12	-	12	12	-
울산	13	13	-	8	8	-	6	6	-
경기	32	32	-	22	22	-	18	18	-
강원	3	3	-	3	3	-	3	3	-
충북	7	7	-	6	6	-	6	6	-
충남	7	7	-	6	6	-	5	5	-
전북	8	8	-	7	7	-	5	5	-
전남	5	5	-	4	4	-	3	3	-
경북	13	13	-	11	11	-	11	11	-
경남	13	13	-	7	7	-	7	7	-
제주	6	6	-	3	3	-	4	4	-

4. 바로 전 3년간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12	254	19	42	3	0	228
2013	228	10	65	4	2	169
2014	169	13	25	2	6	155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5. [하늘교육 교육원/센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 사업 현황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센터]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12.12.31.	2013.12.31.	2014.12.31.
관계사	(주)종로학원	종로학원	20090100594	교육서비스업	8/4	8/3	8/3

6.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1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 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지역	2014년 말 가맹점 수	201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전체	155	131,006	594,360	14,580	
서울	29	155,436	366,120	86,400	
부산	4	66,960	104,400	32,580	
대구	25	113,838	235,980	14,580	
인천	11	229,011	422,640	85,500	
광주	6	68,850	109,440	28,260	
대전	12	134,940	341,280	49,680	
울산	6	86,520	126,000	55,800	
경기	18	152,152	594,360	45,900	
강원	3	101,280	116,820	87,480	
충북	6	163,770	262,260	96,480	
충남	5	118,764	176,940	66,060	
전북	5	109,260	151,200	16,020	
전남	3	118,380	148,500	72,180	
경북	11	112,630	195,480	47,880	
경남	7	110,108	189,360	41,040	
제주	4	113,580	142,560	76,140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과목당 평균 수강료 180,000원×해당 교육원 2014년 총 과목 수]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8%~20%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7.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 경기, 강원	강남지국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태용 지국장	02)780-9143	2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999.08.01~	×	×	×
서울, 경기	강북지국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영석 지국장	02)780-3048	2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999.08.01~	×	×	×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인천, 경기	인천지국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춘용 본부장	02)780-9145	1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999.08.01~	×	×	×
대전, 충청도	대전지국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23번길 (대우토피아 5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인식 지국장	042)470-6202	2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999.08.01~	×	×	×
대구, 경북	대구지국	대구시 수성구 범어천로 126 코오롱하늘채상가 206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조석종 지국장	053)422-3201	3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999.08.01~	×	×	×
광주, 전라도, 제주도	광주지국	광주시 서구 화개중앙로 71(금호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양경렬 지국장	062)371-3202	1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999.08.01~	×	×	×
부산, 경남, 울산	부산지국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14번길 7-11 동남빌딩 2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차증호 지국장	051)468-3209	1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999.08.01~	×	×	×

※ 관리 가맹점수는 2014년 12월말 관리 가맹점 수 기준임

8.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14년]에 [하늘교육 교육원/센터]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2]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471,313	1,471,313	0	
광고	소계	연중	831,089	831,089	0	
	TV, 신문, 라디오	연중	561,928	561,928	0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온라인, SNS	연중	269,161	269,161	0	네이버, 다음 등
판촉	소계	연중	640,224	640,224	0	
	판촉홍보물	연중	640,224	640,224	0	직영 및 가맹점 판촉홍보물

9.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국민은행 증권타운지점	영업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층(여의도동 신송빌딩)	02)783-769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하늘교육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0.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하늘교육 교육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 인적보증 등의 추가 담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계약체결 비용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재계약 계약체결 비용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1) 계약체결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금	교사용지도서	2,7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책자 및 자료 제공 대가임
	신규교재 전세트 /인쇄물	2,000			
	문제은행 출력물 /입시정보책자	300			
	상호사용료	별도 징수 없음 (단, 상호표지 의무 준수해야함)			
계	5,000				

※이외별도 제공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정가 또는 원가로 추가 징수 할 수 있음.

2) 당사는 귀하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인적 보증 등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가맹금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영업 중 매주 신청한 교재 수에 따른 교재비용 외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사업1본부 (전화:02-761-3200)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담당지국장 배정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입지 최종 확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	교육관련업 종사자 우대
종업원, 강사	-	별도의 기준 없음 단, 강사의 경우 전공자 우대 (가맹점에서 채용, 관리 전담 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사항없음]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는 매주 신청한 교재 수에 따른 교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해당사항 없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계약 체결비	교사용지도서	2,700	계약연장(갱신) 후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책자 및 자료 제공 대가임	신규점의 약 60% 수준
	문제은행 출력물 /입시정보책자	300				
	상호사용료	별도 징수 없음 (단, 상호표지 의무 준수해야함)				
계		3,000				

※이외별도 제공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정가 또는 원가로 추가 징수 할 수 있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동의하고 기존 가맹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해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일체의 권리 의무를 당사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동의하에 영업 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귀하의 당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하늘교육 교육원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지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본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교재 및 지침서를 반납하여야 하고 외부 및 내부Sign은 15일 이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본사에 이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하늘교육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하늘교육 교육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는 별도로 없습니다. 단, [하늘교육 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교육프로그램이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업환경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교재구입은 매 주차별로 전산을 통해 신청합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교재	수학 MEX	왼쪽에 기재된 제품을 통해서 반드시 교육을 진행해야 함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초·중등 EPS		
	고급단계 EPS		
	SEG 창의논술		
	SEG 통합교과논술		
	SEG 시사원정대		
	하늘교육 과학		
	C-MEX		
	Pre-MEX		
	MEX		
	C-Science		
	SCIENCE		
	SEG 국어통합논술		
	학교시험만점학습		
	SKY VOCA		
	Phonics		
한국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사업자 이외의 유사업체 (타학원 등)	가맹본부 교재 일체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위탁 구매 및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원용·방문용 교재의 공급가 외에 하늘교육 교육원에서 운영되는 용역(수업)에 대한 가격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교육원을 통해 판매되는 일부 단행본 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가격 결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공지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초등, 중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보습학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초등학교 1개교당 1개 교육원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사업1본부 해당 지국장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상기 기재 사항 외 영업지역은 존재하지 않음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하늘교육 교육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13]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지침을 어기고, 회원에 대한 관리를 해태한 경우	16조 1항-①
○ 가맹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재 판매대금을 가맹본부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16조 1항-②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제공물 이외의 학습물을 이용한 회원관리의 경우	16조 1항-③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경시대회 응시료 등 각종 비용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16조 1항-④
○ 계약상의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6조 1항-⑤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권리양도 및 담보제공 할 경우	16조 1항-⑥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인테리어 매뉴얼(회사로고 포함) 기준에 맞지 않는 인테리어 및 간판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정 요청을 받고도 2주 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16조 1항-⑦
○ 월 학력 진단 평가 의무시행을 준수하지 않고, 전국 초·중 영어/수학 학력평가를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참가하도록 노력하지 않았을 경우	16조 1항-⑧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호간의 신의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16조 1항-⑨
○ 가맹본부가 지정한 교재 제작·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료를 가맹사업자가 공급 목적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판매한 경우	16조 1항-⑩
○ 가맹사업자가 매주 신청하는 교재 과목수가 70과목 미만일 경우(단, 신규 계약 시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16조 1항-⑪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하늘교육”이 포함된 상호·상표·도메인 등을 등록·사용한 경우	16조 1항-⑫
○ 기타 가맹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6조 1항-⑬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3]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지침을 어기고, 회원에 대한 관리를 해태한 경우	16조 1항-①
○ 가맹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재 판매대금을 가맹본부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16조 1항-②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제공물 이외의 학습물을 이용한 회원관리의 경우	16조 1항-③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경시대회 응시료 등 각종 비용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16조 1항-④
○ 계약상의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6조 1항-⑤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권리양도 및 담보제공 할 경우	16조 1항-⑥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인테리어 매뉴얼(회사로고 포함) 기준에 맞지 않는 인테리어 및 간판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정 요청을 받고도 2주 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16조 1항-⑦
○ 월 학력 진단 평가 의무시행을 준수하지 않고, 전국 초·중 영어/수학 학력평가를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참가하도록 노력하지 않았을 경우	16조 1항-⑧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호간의 신의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16조 1항-⑨
○ 가맹본부가 지정한 교재 제작·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료를 가맹사업자가 공급 목적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판매한 경우	16조 1항-⑩
○ 가맹사업자가 매주 신청하는 교재 과목수가 70과목 미만일 경우(단, 신규 계약 시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16조 1항-⑪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하늘교육”이 포함된 상호·상표·도메인 등을 등록·사용한 경우	16조 1항-⑫
○ 기타 가맹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6조 1항-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주 신청하는 교재 과목수가 70과목 미만]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6조 2항-①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16조 2항-②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16조 2항-③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6조 2항-④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16조 2항-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6조 2항-⑥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16조 2항-⑦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6조 2항-⑩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6조 2항-⑪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16조 2항-⑫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 계약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사전 별도의 공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당사가 운영하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사업1본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동의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하늘교육 사업1본부 (02-761-3200)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의 계약은 양도인의 잔여기간을 이행하고,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동의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또는 대리행사) 신청 → 당사 사업1본부 검토(30일 가량 소요) → 동의 여부 통지	
대리행사	본부 동의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불가능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 지역 내에서 [하늘교육 교육원]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하늘교육 교육원과 동일대상, 과목을 지도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사업1본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하늘교육 사업1본부 (02-761-320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개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3항목) ■ 교육상당 자료 보유 현황 ■ 교육지도 적합성 ■ 교육, 상담 장소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교육지도 및 상담환경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2회/1월	사업1본부 담당지국	
품질 관리(3항목) ■ 간판규정 ■ 교육원 단독운영여부 ■ 타교재 사용여부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2회/1년	본사 홍보팀 교재연구소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하늘교육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모집광고	전액	없음	별도 절차 없음	대중매체 광고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교육원500만원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3	
지역선정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동종업종 현황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9~28	
가맹금 예치	- 금융기관(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8~27	교육원500만원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학원인가 가능 여부 확인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교육원운영교육 실시	D-7	
운영 최종점검	- 전산, 교재, 홍보물 최종 점검	D-6~3(3일)	
교육원 오픈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점 개설 및 수시	가맹본부의 소정 양식을 통해 '사업운용계획' (초기개설비용, 수강료, 개설지역 주변 주택현황, 학교 및 학원 현황 등)과 홍보 및 회원모집 전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 지원하며, 가맹본부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가맹본부 소정 양식 제공 → 검토 및 보완 → 사업운용 →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없음	문의: 하늘교육 사업1본부 (02-761-320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교재 구성 및 지도법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규교재 소개 입시정책변화에 따른 운영방안 등	집단 강의	-매년 상반기·하반기 실시 -분기별 비정기적으로 실시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1일	-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매년 상반기·하반기 실시 분기별 비정기적으로 실시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해당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1본부(02-761-32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edusky.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